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조치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1. 국민 보건을 위한 귀 협회(학회)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의료용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21.5월) 주요내용 >

- (일반원칙)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
- (기간) 처음 처방시 7일 이내 단기 처방, 추가 처방시 가능한 1개월 이내 처방
 -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할 것 권장하며, 패치제는 투여간격 준수
- (용량)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 사용
- (연령)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

3.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진통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통제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1.10.29일자로 1,461명의 의사에게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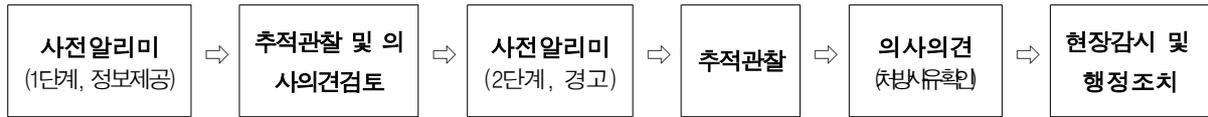
< 「진통제 조치기준」 (비암성 만성통증) >

- **전체 마약류(패치제 제외)**
 - (기간) 3개월 초과 처방·투약
 - (연령) 품목 허가사항에 따른 연령금기를 벗어난 처방·투약
- **펜타닐 패치제**
 - (기간) 3개월 초과 처방·투약
 - (연령)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
 - (투여간격)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난 처방·투약

4. 앞으로 우리 처는 "사전알리미"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고, 귀 회원께서는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시도록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알리미 운영절차



5.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이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 data.nims.or.kr

붙임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가정의학과 의사협회장, 대한가정의학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의사협회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장, 대한비뇨의학과 의사협회장, 대한비만학회장,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장, 대한산부인과 학회장, 대한성형외과 의사협회장, 대한신경과 의사협회장, 대한신경과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협회장,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장, 대한일반과 의사협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협회장, 대한중양내과 학회장, 대한피부과 의사협회장, 대한의학회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귀하

주무관 **손희빈** 사무관 **한원선** 마약관리과장 **김정연** 전결 2021. 10. 29.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4765 (2021. 10. 2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88 팩스번호 043-719-2890 / heebin218@korea.kr / 비공개(5)